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4년 5월 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4월 15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보류(2024. 4. 30.)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의결(2024. 5. 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 제안이유

조직진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균형발전추진단’ 신설(안 제3조, 안 제11조)

구 분	내 용
신 설	- 균형발전추진단
이 관	- 도시전략과, 신청사건립추진과,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명칭변경	- 신청사건립추진단 → 신청사건립추진과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 도시전략과

나. 국 명칭변경(안 제3조)

구 분	내 용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 행정문화국 - 생활복지국 → 복지가족국

다. 행정문화국 부서조정(안 제4조)

구 분	내 용
신 설	- 체육관광과
폐 지	- 협치분권과
명칭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라. 기획재정국 부서조정(안 제5조)

구 분	내 용
명칭변경	- 홍보정책과 → 홍보소통과 - 세무1과 → 재산세과 - 세무2과 → 지방소득세과

마. 미래경제국 부서조정(안 제6조)

구 분	내 용
폐 지	- 스마트도시과
명칭변경	- 정보통신과 → 스마트정보과
직제순위 변경	- 자원순환과(6) → 자원순환과(3) - 정보통신과(4) → 스마트정보과(5)

바. 복지가족국 부서조정(안 제7조)

구 분	내 용
신 설	- 복지지원과
명칭변경	- 가족정책과 → 출산보육과
직제순위 변경	- 가족정책과(5) → 출산보육과(4)

사. 도시관리국 부서조정(안 제8조)

구 분	내 용
이 관	- 건설관리과 - 도시계획과 → 균형발전추진단 이관 - 도시재생과 → 균형발전추진단 이관

아. 안전교통국 부서조정(안 제9조)

구 분	내 용
신 설	- 안전체험관
이 관	- 건설관리과 → 도시관리국 이관

자. 보건소 부서조정(안 제13조)

구 분	내 용
명칭변경	- 보건행정과 → 보건관리과

차. 각 부서 사무분장 조정 · 정비(안 제4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인건비 493,665천원이 예상됨
[도시균형발전추진단(4급)의 신설, 3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폐지]
-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22. ~ 2024. 4. 1.)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 수정으로 재입법예고(2024. 3. 29.~ 4. 1.)
- 2)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임

나. 주요내용

개편 조직체계

【기존】 6국 44과(1담당관 2단) 194팀 20동 60팀

【개편】 7국(1단) 45과(1담당관) 199팀 20동 62팀 (증 1단 1과 7팀)

□ 부서 변동 내역 (2024. 7. 1. 字)

1) 국별 변동내역

구 분		계	감사 신청사 원도심	행정 관리국	기획 재정국	미래 경제국	생활 복지국	도시 관리국	안전 교통국	보건소	균형 발전 추진단
개편 전	과	44	3	6	6	6	6	7	6	4	-
	팀	194	12	23	26	24	29	33	28	19	-
개편 후	과	45	1	6	6	5	7	6	6	4	4
	팀	199	5	23	28	20	34	31	26	19	13
증감	과	1	-2	-	-	-1	+1	-1	-	-	4
	팀	5	-7	-	2	-4	-4	+5	-2	-	13

2) 유형별 변동

구 分	계	신 설	폐 지	이 관	순위변경	명칭변경
국·단	3	1				2
부서· 담당관	22	3	2	5	3	9
팀	62	14	9	11	2	26

- 기존 6국 44과(1담당관 2단) 194팀 20동 60팀에서 7국(1단) 45과(1담당관) 199팀 20동 62팀으로 변경하고, 1국 3과 14팀을 신설하고, 2과 9팀을 폐지하였음. 또한, 5과 11팀을 이관하였으며, 2국 9과 26팀의 명칭을 변경함. 이외에도 조직개편에 맞춰 3과 2팀의 실제 순위를 변경하였음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기존에는 4급 이상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했으나, 지난 3월 29일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기존의 개별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및 신청사 건립추진과로 구성된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4급)을 신설함. 이를 통해 구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구의 행정여건 변화와 공항거점도시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지원과를 신설함
- 이와 함께, 서남권을 대표하는 안전체험 교육시설인 안전체험관을 신설하여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사업 실행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협치분권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폐지함. 협치분권과 자원봉사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의 관제팀 업무는 안전관리과로, 스마트도시 지원팀 업무는 스마트정보과로 이관함

- 이밖에도 수급자 수 등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화곡1동과 등촌3동을 기존 3개팀에서 4개팀으로 확대 재편하였음
- 집행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신설·운영하였으며, 구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조직개편 대상 부서 및 팀과 다양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개편안을 확정하였음. 이번 개편을 통해 산적한 현안사업과 빠르게 변화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하반기 조직개편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서의 신설·폐지·이전 등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진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370호)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 시·도 2급, 시·군·구 3급
2. 소속기관: 시·도 3급, 시·군·구 4급